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0.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0월 2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선우근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“교육지원과”를 “교육청소년과”로 명칭을 변경함.
- (2) 안 제6조 제2항 제20호에서는 주민생활국장의 분장사무에 “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강화와 각종 학교지원 사업과 학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도 저촉됨이 없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